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3년 5월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의 시험수당지급 기준표상의 수당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경직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안 제2조)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별표] 에서 정한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해 수당을 지급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행정자치부 국가고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동안 현행조례에서 정하고있는 시험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상황에서 세 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국가고시 예산 집행기준을 근거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경기도는 물론 성남시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시험 수당을 행정자치부 국가고시 예산집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개정 절차중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 동 조례개정으로 향후 각종 시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시험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심사·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